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0. 9. 1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8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허주연 의원 등 8인)
-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허주연 의원)

- 가.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예방접종 지원대상(안 제2조)
  - 예방접종 지원절차(안 제4조)
  - 예방접종 실시 관련 의료기관 위탁(안 제5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강남구청장과 협의
- 입법예고 : 생략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sup>1)</sup>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4급감염병으로 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sup>2)</sup>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sup>3)</sup>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대상자는 기존(생후 6개월~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사업을 올해부터 확대(만 14세~18세, 만 62세~64세)하고 있는 바 예산은 국·시·구비(30:35:35) 매칭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한편, 국가예방접종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비 및 시 특별교부금을 통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까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와 계절변화에 따른 인플루엔자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1호의 ‘예방접종 비용’은 강남구가 주민 또는 강남구 소재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 2)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인플루엔자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임. 제2호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4)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게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 중 사회적약자에 해당하거나 주민이 아니더라도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까지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는 것임.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1호에서는 구민 중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2호에서는 구민이 아니더라도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지원하려는 바 지원대상이 적절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제1항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플루엔자 감염병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매년 시기에 맞추어 1회 접종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2019년도에는 구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51개소에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 바 있음. 제2항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지원절차)의 제목은 ‘(예방접종 절차)’로 규정하는 바람직해 보임.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항 중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를 ‘신분증 등’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의료기관의 위탁)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sup>5)</sup>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sup>6)</sup>으로 ‘질병관리본부’ 가 ‘질병관리청’ (시행 2018.9.12.)으로 승격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7조(운용)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이 조례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위탁 업무가 유사하여 이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에서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적인 행정집행적 성격으로 보여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중 ‘제2조제2호’ 을 ‘제3조제2호’ 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시비 및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3조(지원대상)의 대상 선정은 기준은 무엇인지.

○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수 접촉자들의 경우 질병에 취약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여 전염시 의원 방문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조례안에 제정하였으며, 가능하다면 본예산 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향도 고려하도록 하겠음.

#### **5. 토론 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98호

제안일자 : 2020.9.17.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조의 제목 및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게 조의 제목 수정 및 자구 수정(안 제5조)
- 부칙 중 관련 조항 인용 자구 수정(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지원절차)” 를 “(예방접종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을 “신분증 등을” 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2조제2호” 를 “제3조제2호” 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u>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u>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유효기간) <u>제2조제2호</u>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5조(예방접종 절차) ① ----- ----- 신분증 등 을 ----- -----.</p> <p style="text-align: center;">②·③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유효기간) <u>제3조제2호</u>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허주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
----------	-----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허주연·김영권·이향숙·  
박다미·이호귀·전인수·  
한운수·허순임(이상8인)

##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 지원대상(안 제2조)
- 나. 예방접종 지원절차(안 제4조)
- 다. 예방접종 실시 관련 의료기관 위탁(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강남구청장과 협의
-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비용”이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위탁의료기관”이란 강남구가 예방접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예방접종일 현재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다.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